

의안번호	제729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발의자	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2일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9
----------	-----

발의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발 의 자 :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박지현,
이동우, 이상정, 최정훈

1.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부터 소아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에 있으나, 충청북도 내에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5개뿐임
- 이에 심야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의 건강 보호와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6조)
-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관한 지원 사업과 병원 이용실태 조사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달빛어린이병원 홍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조례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비용 추 계 : 붙임
- 협 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진료시간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평일 심야 진료시간: 18:00부터 24:00까지(최소 18:00부터 23:00까지)

나.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시간: 09:00부터 22시까지(최소 10:00부터 18:00까지)

2. “소아청소년환자”란 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

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4.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이하 “협력약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약국 지정과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조사 및 지도·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4조제2항의 협력약국의 지정과 경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도 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

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2012. 2. 1.>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야간·휴일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인 소아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관에 대해 운영비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방지 및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도내 달빛어린이 병원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는 집행지침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함
 - ※ 2024년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지원 사업 집행지침
- 추계기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인건비 상승률 변동 가능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인건비	767,280	80,000	171,820	171,820	171,820	171,820

다.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금(보건복지부) 및 자체재원 매칭사업으로 추진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4.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80,000	171,820	171,820	171,820	171,820	767,280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국비)		80,000	171,820	171,820	171,820	171,820	767,280
세 출		160,000	343,640	343,640	343,640	343,640	1,534,560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국비50%, 도비20%, 시군비30%)		160,000	343,640	343,640	343,640	343,640	1,534,560
국 비	50%	80,000	171,820	171,820	171,820	171,820	767,280
도 비	20%	32,000	68,728	68,728	68,728	68,728	306,912
시군비	30%	48,000	103,092	103,092	103,092	103,092	460,368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80,000	171,820	171,820	171,820	171,820	767,280
	보조금	80,000	171,820	171,820	171,820	171,820	767,280
자체 수입	소 계	32,000	68,728	68,728	68,728	68,728	306,912
	지방세	32,000	68,728	68,728	68,728	68,728	306,912